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7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안철수 · 박상웅 · 김성원
김선교 · 김태호 · 서천호
장승규 · 이상휘 · 김미애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권의 양도로서 그 양도가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 24. (생략) <u><신설></u>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 ----- -----. 1. ~ 24. (현행과 같음) <u>25.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u> <u>에 따른 주권의 양도로서 그</u> <u>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u> <u>합계액 이하인 경우</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